[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0. 11. 29.>

개정 예고문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업무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회규관리규정 제3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08. 07.

대한체육회장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업무 관리 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1. 개정 이유

-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 환경 변화에 따라 국제스포츠기구의 요구 수준 반영 필요성이 증가하여 유치 및 개최 업무 관리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유치 및 개최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회 선정절차를 통해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지자체의 명칭 및 정의 변경(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부칙)

나. 체육회 선정절차 운영의 정책타당성 확보를 위한 유치희망도시 제출 서류 및 작성내용 구체화(제2조, 제4조)

다. 대회 유치·개최 업무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상호 협력 문구 신설(제3조)

라. 국제스포츠기구 선정절차를 준용하여, 현행 선정절차 상 주요 의사결정기구(국제위원회, 이사회, 총회)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을 통해 체계 개선(제5조)

마. 평가위원회 요청에 따른 유치희망도시의 보완자료 제출 절차가 필요한 경우, 국제위원회를 통해 사전 승인(제9조)

바. 협약서 내, 유치추진도시로서의 준수사항 구체적 명시(제10조)

사. 선정절차 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한 조항 신설(제11조, 제12조)

아. 유치추진도시에 대한 제재 추진 근거 및 제재 기준·처리절차 세부화(제13조)

자. 개정(안)에 따른 경과조치 및 적용례 명시(부칙)

차. 규정 체계상 표현 보완을 위한 일부 자구 수정(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카. 조문 신설에 따른 조항 번호 변경(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3. 의견제출

- 이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업무 관리 규정」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체육회 법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이유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대한체육회 법무팀 이메일 주소: law@sports.or.kr

다. 의견제출방법: 이메일

붙임 1.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업무 관리 규정 일부개정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